



---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태모 의원 등 6명
제출연월일	2026. 2. 9.

#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호
----------	------

발의연월일: 2026. 2. 9.

대표발의자: 이태모

공동발의자: 서 원, 민병춘,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 1. 제안이유

논산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재정비하여, 보호대상을 임산부에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안 제4조)
- 나.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및 자동차 표지의 발급(안 제5조, 안 제6조)
- 다.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및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모자보건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 조례안예고: 2026. 2. 9. ~ 2. 14. (5일간)

##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논산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가족배려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그 밖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또는 영유아 가족이 탑승한 자동차임

을 알아볼 수 있는 “가족배려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 등 6명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 □ 「영유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